

추가 항목

**WAC 296-62-600** 감염성 질병에 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 보고 및 안내에 대한

요구 사항.

[ ]

추가 항목

**WAC 296-62-60001** 목적과 범위. WAC 296-62-600 에서 296-62-

60005 까지의 내용을 통해, L&I 의 직업안전 및 건강관리부 (DOSH)에서 감염성 질병에 관한 내용과 공중보건 비상사태시의 감염 가능성을 해당 법과 2021 년 긴급 노동 보건기준법의 252 장 2 항, 3 항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노동자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할 요구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요구 사항은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동안 워싱턴 주에 있는 모든 고용자에게 적용된다.

[ ]

추가 항목

**WAC 296-62-60002 정의. 노동자의 범위.** WAC 296-27-02103 에 따라 OSHA

300 에 등록되어 직원의 상해 또는 질병에 관해 기록할 의무가 있는 고용자의  
피고용자와 더불어 그 밖에 296-27-02103(2)에 근거하여 감독하는 임시 지원  
피고용자, 파견 직원, 인력 공급 회사와 같은 일일 피고용자를 포함한다.

**공중보건 비상사태.** 감염 및 전염성이 있는 질병에 관한 선언을 의미하며, 대규모  
감염 사태를 포함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일컫는다:

(a)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주에 소속된 지역이 포함된 국가적, 지역적 긴급  
사태를 선언하거나

(b) RCW 43.06.010(12)에 근거하여 워싱턴주 주지사가 미국의 모든 지역에  
대해 긴급 사태를 선언한 경우.

[ ]

추가 항목

**WAC 296-62-60003 기본 지침 사항.** (1) WAC 296-62-600 에서 296-62-  
60005 까지의 내용에서는 자신의 건강 상태나 진단 상태에 대해 고용자에게 보고할  
피고용자의 의무를 지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2) WAC 296-62-600 에서 296-62-60005 까지의 내용에서는 주 또는 연방법에 따른 고용자의 보고 의무에 대한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 하고 있지 않고 있다.

[ ]

추가 항목

**WAC 296-62-60004** 공중보건 비상사태 발생시의 보고 의무. 고용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발생시 보고할 의무가 있다:

(1) 공중보건 비상사태 발생시, 50 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a) L&I 의 직업안전 및 건강관리부 (DOSH) 에 24 시간 이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할 것:

(i) 워싱턴주 보건국 또는 지역 보건 관할권에서 COVID-19 가 발생한 근무지의 고용주에게 연락을 취한 기간 중에 열 명 이상의 피고용자가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나

(ii) 다음에서 언급하는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 사이에 열 명 이상의 피고용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시작 시점: 연속되는 14 일 이내에 근무지에서 두 명 이상의 피고용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종료 시점: 근무지에서 마지막 양성 반응이 보고되고 연속 28 일이 지났을 때.

(b) DOSH 1-800-4BE-SAFE (1-800-423-7233)에 연락하거나 사망, 입원, 수술, 안구 상실 시 보고하는 연락 체계를 이용하여 보고할 것.

**면제:**

- 상황이 발생한 고용자의 경우 상황 종료시까지 DOSH에 지속하여 보고할 의무는 없다.
- 상황 발생 후 위양성 결과에 대하여 인지한 고용자의 경우 DOSH에 다시 상황을 보고할 의무는 없다. 동일한 상황 발생시처럼 근무지를 운영해 나갈 수 있다.

(2) 해당 세부 항목의 목적:

(a) "근무지"는 한 명 이상의 피고용자가 노동 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용된 고용자의 감독권이 있는 단지, 작업장, 건물, 방, 또는 기타 다른 장소를 의미한다.

(b) "확진"은 검사에 의해 감염성이 있는 질병 양성 반응이 나온 경우를 의미한다.

**중요 사항:** DOSH에 보고할 때, 피고용자의 이름과 같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하지 않을 것.

[]

추가 항목

**WAC 296-62-60005 잠재적 감염 노출에 관한 보고 안내.** 본 항목의 세부 항목

(1) 과 (2) 의 내용은 RCW 9A.50.010 에서 지정한 보건 기관 및 고용자에게 적용된다.

본 항목의 세부 항목 (3) 과 (4) 의 내용은 RCW 9A.50.010 에서 지정한 보건 기관에

적용된다. 본 항목의 세부 항목 (4) 의 내용은 모든 고용자에게 적용된다.

(1) RCW 9A.50.010 에서 지정한 보건 기관을 제외한 고용자는 잠재적 감염 노출 가능성을 인지할 시, 영업일 기준 하루 이내에 해당 내용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a) 해당되는 개인이 감염되었을 경우 당사자와 같은 날짜에 같은 근무지에서 근무한 피고용자들에게 감염 노출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알릴 것. 서면 안내에는 해당 피고용자가 감염성 질병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리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i) COVID-19 의 경우, 잠정적으로 해당되는 개인이란 확진자가 근무지를 떠나 증상을 호소하기 이틀 전 (무증상자의 경우 검사일 이틀 전) 에 접촉한 사람이다.

(ii) 서면 안내는 직접 전달, 이메일, 문자 메시지를 포함하여 영업일 기준 하루 이내에 피고용자에게 전달될 것이라 예상되는 통상적인 연락 체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iii) 서면 안내는 영어를 포함하여 피고용자의 대다수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b)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i) WAC 296-62-600 에서 296-62-60005 (1) 까지 명시된 피고용자가 소속된 단체의 대표.

(ii) WAC 296-62-600 에서 296-62-60005 (1) 까지 명시된 임시 지원 서비스, 파견 회사를 비롯한 인력 공급 회사의 고용주.

(c) WAC 296-62-600 에서 296-62-60005 (1) (a) (iii) 까지 명시된 단체 대표 및 고용자의 서면 보고 요구 사항 및 보고 시점에 관한 안내.

(2) 피고용자의 이름이나 등록 번호와 같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하지 않을 것.

(3) RCW 9A.50.010 에 명시된 보건 기관에 해당되는 고용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a) 24 시간 이내에 감염병 노출 가능성이 있거나 높은 피고용자에게 안내를 할

것.

(b) 고용 승인과 함께 단체의 대표에게 감염병 노출 가능성이 있거나 높은

피고용자가 발생한 것을 24 시간 이내에 안내 할 것.

(4) 해당 세부 항목의 목적:

(a) 높은 감염병 노출 가능성. 검사를 통과한 호흡기 또는 다른 개인 보호 장비

없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 노출된 경우

(i) 해당되는 개인과 누적 15 분동안 6 피트 이내에 있거나 24 시간 이상

해당되는 개인의 활동 범위에 있던 경우.

(ii) 비말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개인과 같은 방에 있던 경우. 비말 발생 가능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doh.wa.gov/Portals/1/Documents/1600/coronavirus/COVID19InfectionControlForAerosolGeneratingProcedures.pdf> 참고.

(iii) 소독이 끝나기 전에 비말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다녀간 방에 들어간 경우.

**참고:** COVID-19에 잠정적으로 해당되는 개인이란 확진자가 근무지를 떠나 격리되어 증상을 호소하기 이틀 전 (무증상자의 경우 검사일 이틀 전) 또는 질병 관리 본부 (CDC)의 인력 배치 프로토콜에서 명시한 근무 복귀 일자가 지난 경우에 접촉한 사람을 말한다.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hcp/mitigating-staff-shortages.html> 참고, 2021년 12월 23일 작성.)

**참고:** 소독 시간은 CDC의 지침 사항에 따라 공기중 감염 가능성이 99.9 퍼센트 제거되기까지 소요된 시간을 말한다. (<https://www.cdc.gov/infectioncontrol/guidelines/environmental/appendix/air.html#tableb1> 참고). 절차 완료까지 세 시간 미만이어야 한다. DOH 의료 시설 요구사항에 따라 구성된 의료 공간에서는 한 시간 (시간 당 공기 순환 6회), 공기중 감염 예방 격리실 (AIIR)에서는 15분이면 충분하다.

(b) 잠재적 감염병 노출에 관한 안내. 다음을 의미한다:

(i) 공공 보건 공무원이나 인증된 의료인으로부터 고용자에게 피고용자가

근무지에서 해당되는 개인으로부터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안내받는 것

(ii) 피고용자나 긴급 연락처로부터 해당 피고용자가 해당되는 개인임을

고용자에게 안내받는 것 또는

(iii) 검사 절차를 통해 피고용자의 상태가 해당되는 개인임을 고용자에게

안내하는 것.

(c) 해당되는 개인. 다음에 해당되는 이를 일컫는다.

(i) 공중보건 비상사태에서 지정한 감염성 질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사람

(ii) 지정된 의료인으로부터 공중보건 비상사태에서 지정한 감염성 질병에 대해

양성 반응을 받은 사람



(iii) 공중보건 비상사태에서 지정한 감염성 질병 관련하여 공공 보건

공무원로부터 격리 명령을 받은 사람

(iv) 공중보건 비상사태에서 지정한 감염성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 지역

보건 부처에서 확인된 사람.

(d) 근무지. 해당되는 개인이 근무한 건물, 가게, 시설, 농장 및 기타 다른

장소를 의미한다. 해당되는 개인이 입장하지 않은 건물이나 층, 또는 기타 다른 장소는

“근무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 ]

#### 추가 항목

**WAC 296-62-601 공중보건 비상사태 개인 보호 장비 자진 사용.**

[ ]

#### 추가 항목

**WAC 296-62-60101 목적과 범위.** WAC 296-62-601 에서 296-62-60103 까지

명시된 내용에서는 2021 년 법 146 장 (SB 5254) 과 더불어 공중보건 비상사태시

피고용자가 자진해서 개인 보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 때 사용하는 장비나 기구 이용에 관해서는 2021 년 법 252 장 참고. 해당 요구 사항은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동안 워싱턴 주에 있는 모든 고용자에게 적용된다.

[ ]

추가 항목

**WAC 296-62-60102 정의. 피고용자.** WAC 296-27-02103 에 따라 OSHA 300 에 등록되어 직원의 상해 또는 질병에 관해 기록할 의무가 있는 고용자의 피고용자와 더불어 그 밖에 WAC 296-27-02103 (2) 에 근거하여 감독하는 임시 지원 피고용자, 파견 직원, 인력 공급 회사와 같은 일일 피고용자를 포함한다.

**공중보건 비상사태.** 감염성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거나 조절하는 목적과 관련된 선언을 의미하며, 개인이나 사업장에게 다음과 같은 인물이 선언을 할 수 있다:

(a) 미국 대통령이 국가적, 지역적 긴급 사태를 선언한 경우

(b) RCW 43.06.010(12)에 근거하여 주지사가 주 긴급 사태를 선언한 경우

또는

(c) RCW 70.05.070에 근거하여 지역 의료 공무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

[]

### 추가 항목

**WAC 296-62-60103 개인 보호 장비 자진 사용 요구사항.** (1) 피고용자나

계약자의 개인 보호 장비 착용을 고용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장갑, 고글, 얼굴 보호대를 포함한 보호 장비나 기구를 사용하는 것을

허가해야 한다.

(2) 세부 사항(1)에 기재된 품목의 공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a) 보호 장비 및 기구를 사용함으로써 근무 환경에 위험을 가하지 않고,

노동산업부 (L&I)와 직업안전 및 건강관리부 (DOSH)의 지침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

(b) 얼굴 보호대의 경우 고용자의 신변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경우

(c) 자진해서 사용하는 보호 장비 및 기구가 보건부나 DOSH 에서 지정한 특정 장비의 종류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3) 고용자가 피고용자가 자진해서 사용하는 개인 보호 장비들이 근무지의 보건과 안전을 위한 모든 지침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